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2721
------------	------

2025년 6월 20일
교 육 위 원 회

I 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년 5월 25일, 김기덕 의원
2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3. 상정일자 :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
(2025년 6월 20일 상정, 수정가결)

II 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김기덕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전국적으로 대규모 화재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사고에 대한 예방이 중요시 되고 있음. 특히 학교에서의 화재는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와 함께 학생의 학사일정까지 차질을 준다는 점에서 화재의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.
- 이에 화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, 소방 안

전교육은 물론, 실태조사와 학교 소방시설 협력체계 등의 구축 사항을 규정하여, 학교 화재의 선제적 대응 및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,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이 보장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(안 제3조)
- 다.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 (안 제5조)
- 라.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에 대해 규정함 (안 제6조)
- 마. 소방 안전교육에 대해 규정함 (안 제7조)
- 바. 명예학교안전요원에 대해 규정함 (안 제8조)
- 사.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 (안 제9조)
- 아.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 (안 제10조)

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박광선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조례안은 2025년 5월 25일 김기덕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721호로 발의되어 2025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
- 동 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대규모 화재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,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화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

- 최근 경북지역 산불 등 전국적으로 큰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, 서울시교육청 관내에서도 무학여고 급식실 화재¹⁾ 사고가 발생하는 등 화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

특히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이 좁은 공간에 밀집된 구조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, 교육환경에 맞는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.

[표-1] 최근 3년간 서울시 관내 학교 화재사고 발생 현황(화재 원인별)²⁾

화재 원인 년도	전기적 요인 (누전, 합선, 과열, 배터리 폭발 등)	급식실 화재 (조리기구 노후 및 사용 부주의)	공사중 화재	기타	계
2022년	9	-	1	2	12
2023년	11	2	2	2	17
2024년	6	-	5	7	18
계	26	2	8	11	47

-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6곳에서는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, 서울은 관련 조례가 없어 체계적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입니다.

1) 보도자료 : 서울 무학여고서 화재..."성동구 전체 소방서 투입 진압 중" (중앙일보, 2025.2.15.)

2) 서울시의회 요구자료(2025-1079번)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현황

[표-2] 시도교육청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관련 조례 제정 현황³⁾

지역	조례명	제정 시기 (최초 공포일)
경기	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	2018.05.04.
강원	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조례	2025.05.02
충남	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	2022.02.10.
전북	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	2024.11.01.
경북	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	2022.07.14.
경남	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	2024.12.26.

○ 더욱이 학교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소방시설 설치·점검 등 시설적 요소뿐 아니라, 학생·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,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.

-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안전대책 총괄 및 안전교육 등은 안전총괄담당관이, 소방시설 및 관련 실태조사는 교육시설안전과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바, 소관 부서의 분산으로 인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
○ 이에 동 조례안은 화재사고 예방 및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한 정책적·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학교 화재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, 학생의 생명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.

나. 주요 조문별 검토

1) 조례안의 체계

○ 동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과 정의 및 교육감의 책

3)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(<https://www.elis.go.kr/>)을 통해 검색한 결과를 정리한 것임.
(검색일 2025.06.11.)

무에 대해 규정하고, 안 제4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며, 안 제5조에서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한편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각각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의 수립과 소방 안전교육, 명예학교안전요원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,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각각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등에 있어서 「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」와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을 준수하고 있는바, 조례 제정에 따른 형식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
2) 정의에 관한 검토(안 제2조)

-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“학교”, “화재사고”, “소방시설”, “소방시설등”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.
- 이 중 “학교”는 「유아교육법」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로 한정하고 있으며, 이는 조례 적용 범위를 교육감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학교로 명확히 설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.
- 그 외의 정의 조문은 각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, 법률상 정의를 따르고 있는바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다만, “소방시설” 및 “소방시설등”에 대한 정의는 각각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소방시설법」)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어 정의⁴⁾를 인용하여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

4) 소방시설법 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보고하고 있으나,

형식적 측면에서 법률의 항 표기가 누락되었으므로 정확한 인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[표-3] 정의 규정에 대한 수정안

조례안	수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2. (생 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“소방시설”이란 소화설비, 경보설비, 피난 구조설비, 소화용수설비,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.	3. ----- ----- ----- 제2조제1항 제1호-----.
4. “소방시설등”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(非常口),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.	4. ----- ----- 법 제2조제1항제2호-----.

○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 또한 법 조항 표기를 정확한 인용으로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셨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6864, 2025.6.4.).⁵⁾

3)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검토(안 제5조)

○ 안 제5조는 교육감이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」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계획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(안 제1항), 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 화재사고 대응 안전교육, 소방훈련 등을 명시하셨습니다(안 제2항각호).

1. “소방시설”이란 소화설비, 경보설비, 피난구조설비, 소화용수설비,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2. “소방시설등”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(非常口),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5)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(행정관리담당관-6864, 2025.6.4.)

○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」 제 8조⁶⁾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안전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‘교육안전 종합계획’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, 조례상 ‘교육안전’의 범위에는 교육활동 안전, 생활안전 등 뿐만 아니라 화재를 포함한 재난안전 관련 사항이 포함⁷⁾됩니다.

- 따라서 이미 수립되고 있는 종합계획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고, 관련 정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판단됩니다.

○ 한편,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‘2025년 교육안전 종합계획’을 수립·시행하고 있으며, 동 계획에는 재난 및 안전 상황에 대한 관리체계, 각종 재난 유형별 대응체계 등 종합적인 내용과 함께 유형별 세부 집행계획 및 예방을 위한 추진과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- 화재대응과 관련해서는 ‘교육시설 화재 및 폭발 관련 세부 집행계획’이 수립되어 있으나, 중점 추진대책에는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.

- 이에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등의 내용을 계획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, 학생과 교직원의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실질적인 화재 예방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
6)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」 제8조(교육안전 종합계획의 수립)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안전 종합계획(이하 ‘종합계획’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7.22.>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교육안전 기본방향 및 추진 계획
2. 교육안전 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
3. 교육안전 관련 제반 법령에서 정하는 이행 사항
4. 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확인·평가에 관한 사항
5.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7)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」 제5조(교육안전의 범위)

* 교육활동 안전, 생활안전, 시설안전, 교통안전, 보건안전, 급식안전, 교육환경 안전, 재난안전(화재 포함)

[표-5] 교육시설 화재 및 폭발 대비 중점 추진대책⁸⁾

구분	중점 추진대책
화재대피훈련	연 2회 이상의 화재대피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, 기숙사 학생 및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·훈련 강화
시설물 안전점검	정기점검: 계절별 취약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, 재해취약시설(화재취약시설)을 지정·관리
소방시설 실태조사	교육시설 화재 예방 활동 및 소방차 진입 확보 현황 실태조사를 통한 소방시설 안전 강화
화재취약시설 개선	드라이비트, 샌드위치패널 등의 화재 취약시설 개선 및 스프링클러, 주방 자동 소화장치 등의 화재 예방 시설 설치

○ 따라서 안 제5조는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종합계획에 화재예방 및 안전계획 관련 사항을 제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,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.

4)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에 관한 검토(안 제6조)

○ 안 제6조는 교육감이 체험 중심의 학교 소방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(이하 “표준 지침”)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(안 제1항), 학교장이 이를 개별 학교 여건에 맞게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2항)하고 있습니다.

○ 이러한 표준 지침은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는 소방 안전교육의 질적 편차를 줄이고 교육 내용의 표준화와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, 학교현장에 일관된 교육 기준을 제공하는 정책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○ 특히, 학교장이 지침을 자율적으로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

8) 2025년도 교육안전 종합계획(안전총괄담당관) p.33

* (세부 집행계획 1-4.) 교육시설 화재 및 폭발 대비 관리체계 운영 중 발췌

교육청의 정책방향과 학교의 자율성 간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, 교육 활동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5) 소방 안전교육에 관한 검토(안 제7조)

- 안 제7조는 학교장이 관할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각호에 규정한 119 화재 신고 요령, 비상 탈출 및 대피훈련, 소화기 사용 체험 등 체험 중심의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는 화재 발생 시 학생 및 교직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, 체험 중 심 교육을 통해 기존 이론 중심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한편 학교장이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안전교육을 시 행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,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 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교육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.
- 현재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및 서울시 소방재난본부, 기타 단체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학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, 동 규정은 이러한 협력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에서 적절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.

[표-5] 2024년 관내 학교 소방안전교육 실시 현황⁹⁾

연번	프로그램	내 용	학교 수	비 고
1	2024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	소방서에서 학교로 찾아가 화재안전(소화기 사용, 화재대피) 및 응급처치(심폐소생술, 자동 심장충격기) 교육	429	소방재난본부 연계

9) 서울시의회 요구자료(2025-1079번)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현황

연번	프로그램	내 용	학교 수	비 고
2	2024 상하반기 안전체험관 체험교육 우선예약 프로그램	학교에서 서울특별시 안전체험관으로 찾아가 화재안전(소화기 사용, 화재대피) 및 응급처치(심폐소생술, 자동심장충격기) 교육	259	서울시 연계
3	2024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	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선정한 업체가 학교로 찾아가 화재대피 행동요령을 VR로 교육 및 응급처치(심폐소생술, 하임리히법) 교육	66	교육청 자체사업
4	2024 학교안전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및 강사비 지원 프로그램	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(소방 포함) 전문강사 예산 및 운영을 지원하여 학교 안전교육(소방 포함) 지원	33	교육부 연계
5	2024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	학교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(이동체험차량, 소방차 등을 활용하여 교통안전, 지진, 물소화기, 화재안전 등 프로그램별 순환식 체험교육 진행)	6	교육부 연계
6	2024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	학교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(소화기 사용 및 화재 대피)	122	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 협회 연계
7	2024 특수학교 대상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	학교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(소화기 사용 및 화재 대피)	5	교육부 연계
8	2024 국민생애주기별 안전교육	학교로 찾아가는 안전교육(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및 심폐소생술 실습)	10	공군항공안전 단 연계
계			930	

6) 명예학교안전요원에 관한 검토(안 제8조)

- 안 제8조는 학교장이 학부모 등을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소방 안전교육 시 활동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(안 제1항), 이에 대해 관할 소방서와 연계한 전문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2항)하고 있습니다.
- 동 규정은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조¹⁰⁾에 따른 명예학교안전요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상에 구체화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갖춘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.
- 해당 조항은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,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학교안전 대응체계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또한 관할 소방서와 연계한 전문

10) 학교안전법 제9조 (명예학교안전요원 위촉) 학교장은 학부모 또는 지역 주민 등을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순찰, 교통지도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.

교육 및 연수를 통해 명예학교안전요원이 전문성을 갖춘 실질적인 안전관리 인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7)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검토(안 제9조)

○ 안 제9조는 교육감이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¹¹⁾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필요 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이는 상위법령에 따른 정기적 실태조사를 전제로 하되, 교육청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실질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를 통해 학교 소방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

- 한편, 동 조문은 교육감의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적극 협조를 의무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, 이는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제2항에서 부과한 의무를 재확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

○ 또한, 단서에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실태조사를 가능하게 한 것은, 현장 상황이나 민원, 이상 징후 등에 대응한 탄력적 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실효성 있는 규정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다만, 형식적 측면에서 해당 조문이 내용상 두 개 이상의 항으로 구

11) 교육시설법 제10조의2(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등) ① 교육부장관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교육시설에서의 소방시설(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·방법·절차·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분되어 있지 않음에도 ‘제1항’으로 명시되어 있는바, 항 표시는 삭제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8)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검토(안 제10조)

- 안 제10조는 교육감이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, 지방자치단체,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는 학교 현장에서의 화재사고 예방과 대응은 교육청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는 영역이므로, 유관기관과의 정책적 연계를 통해 화재사고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.
- 특히 최근의 교육 안전 이슈는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,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한편 앞서 안 제7조에서도 소방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관할 소방서와의 연계를 명시하고 있는데, 동 조항은 이러한 협력의 기본 원칙과 제도적 기반을 규정한 것으로 교육·예방·안전 등 전 분야에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Ⅴ. 토론요지 : 없음.

Ⅵ. 수정안의 요지

- “제2조제1호”를 “제2조제1항제1호”로 수정함(안 제2조3호).

○ “법 제2조제2호”를 “법 제2조제1항제2호”로 수정함(안 제2조4호).

○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함.

Ⅶ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Ⅷ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Ⅸ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721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6월 20일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조문을 보다 정확한 표기로 정정하고,
- 안 제9조는 내용상 두 개 이상의 항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항 표기를 삭제함.

2. 주요내용

- “제2조제1호”를 “제2조제1항제1호”로 수정함(안 제2조3호).
- “법 제2조제2호”를 “법 제2조제1항제2호”로 수정함(안 제2조4호).
-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함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3호 중 “제2조제1호”를 “제2조제1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안
제4호 중 “법 제2조제2호”를 “법 제2조제1항제2호”로 한다.

안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원안과 같음)
3. “소방시설”이란 소화설비, 경보설비, 피난구조설비, 소화용수설비,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.	3. ----- ----- ----- ----- 제2조제1 항제1호-----.
4. “소방시설등”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(非常口),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.	4. ----- ----- ----- 법 제2조제1항제2호--- -----.
제9조(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) ① (생 략)	제9조(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) (원안 제1항과 같음)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·교직원·교육활동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”란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 관할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2. “화재사고”란 화재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소방시설”이란 소화설비, 경보설비, 피난구조설비, 소화용수설비,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.
4. “소방시설등”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(非常口),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교육감은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 설치와 예산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

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계획 수립) ① 교육감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 안전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계획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학교 화재사고 대응 안전교육
2. 학교 화재사고 대비 소방훈련
3. 그 밖에 학교 화재사고 안전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) ① 교육감은 체험 중심 학교 소방 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(이하 “표준 지침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지침을 개별 학교 상황에 맞추어 소방 안전교육 시행 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.

제7조(소방 안전교육) 학교장은 관할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체험 중심의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119 화재 신고 요령
2. 비상 탈출 및 화재 대피 훈련 교육
3. 소화기 작동법 및 사용 체험 교육
4. 그 밖에 학교장이 소방 안전교육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명예학교안전요원) ① 학교장은 학부모 등을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소방 안전교육 시 활동하게 할 수 있다.

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학교안전요원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와 연계 하여 전문적인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9조(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) 교육감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다만,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, 지방자치단체,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